

[] 발급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 변경발급 신청서
[] 재발급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성 명		국적(※ 외국인만 기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분실 []훼손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 년 월 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발급 신청의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라.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장 2.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나.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사진 1장 3.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다. 사진 1장	수수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예] ○○도 ○○시(군) ○○로 ○○(△△△△△)
- *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2. "변경사항"란에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